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, 시설 폐쇄의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(안 제24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